# 미용실 창업 ·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용실 창업 · 운영 ]**

이 콘텐츠는 미용업 중 일반 미용업(미용실)을 창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미용실을 창업 ·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격, 창업 준비, 관리, 운영 및 폐업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미용사 면허 취득, 영업신고, 영업설비 설치, 위생교육 이수,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용실 창업 · 운영 ..... 1
1. 미용실 창업 준비 ..... 4
1.1. 미용실 창업 ..... 4
1.1.1. 미용실 창업 ..... 4
1.2. 면허 취득 ..... 5
1.2.1. 미용사 면허 취득 요건 ..... 5
1.2.2. 미용사 면허 신청 ..... 6
1.3.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 8
1.3.1. 창업형태 결정 ..... 8
1.3.2. 입지선정 ..... 10
1.3.3. 점포계약 ..... 12
1.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14
1.4.1. 시설 및 설비기준 ..... 14
1.4.2.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 14
2. 미용실 개업 ..... 17
2.1. 사전 위생교육 ..... 17
2.1.1.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 17
2.2. 영업신고 ..... 18
2.2.1.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18
2.3. 사업자등록 ..... 21
2.3.1. 사업자등록 신청 ..... 21
3. 미용실 운영 ..... 23
3.1.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 23
3.1.1. 위생교육 이수 ..... 23
3.1.2. 위생관리 ..... 23
3.2. 종업원 관리 ..... 25
3.2.1. 근로계약 및 4대보험 ..... 25
3.3. 고객 관리 ..... 27
3.3.1.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27
4. 미용실 폐업 ..... 30
4.1. 폐업신고 등 ..... 30
4.1.1. 폐업신고 등 ..... 30

# 1. 미용실 창업 준비

## 1.1. 미용실 창업

### 1.1.1. 미용실 창업

####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미용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미용실의 종류

| 분야 | 업무범위 | 바로가기 |
|---|---|---|
| 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 |
| 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표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의 업무범위

##### 자격요건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 영업장소

▪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 1.2. 면허 취득

### 1.2.1. 미용사 면허 취득 요건

#### 자격요건

####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 자격증 취득**

▪ 미용사의 자격 검정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 | | |
|---|---|---|
| 미용사 | 필기시험 | 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 관리 |
| | 실기시험 | 미용실무 |

▪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 미용사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2. 미용사 면허 신청

#### 미용사면허증 발급

#### 면허증 신청 방법

▪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참조).

-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 구분 | 제출 서류 |
| --- | --- |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학위증명<br>※ 학위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r>※ 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 발급 수수료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500원
-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3천원

## 미용사면허증 교부

### 면허증의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면허취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면허증의 재교부

▪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면허취소·정지**
>
>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 4., 6. 또는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
>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 위의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 1.3.1. 창업형태 결정

####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

#####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www.kofair.or.kr, ☎ 1588-1490)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가맹점 창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립 창업

▪ “독립 창업”이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조사, 인테리어 콘셉트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실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를 말합니다.

##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의 비교

### 장단점 비교

| | | |
|---|---|---|
|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 | 장점 |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br>▪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br>▪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br>▪ 공동 광고의 효과가 큼 |
| | 단점 | ▪ 가맹금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듦<br>▪ 독자적 자율경영에 제한이 있음<br>▪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 할 경우가 있음<br>▪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해지하기가 쉽지 않음 |
| 독립 창업 | 장점 | ▪ 독자적인 경영, 홍보 전략이 가능하며, 가맹비용이나 보증금 등의 비용이 들지 않음<br>▪ 창업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콘셉트 및 상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 |
| | 단점 | ▪ 실패의 위험성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br>▪ 독자적으로 경영하여야 함(기기구입, 재료구입, 홍보 등을 창업주가 직접 해야 함)<br>▪ 독립광고로 프랜차이즈에 비해 광고 효과가 낮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림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참조>

※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2. 입지선정

####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 미용업이 가능한 건축물

▪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3호다목).

###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 | 제 한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br>▪ 제2종전용주거지역 |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 ▪ 보전녹지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 ▪ 보전관리지역<br>▪ 생산관리지역<br>▪ 농림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영업 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

※ 위의 용도지역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결정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 미용실 창업을 위한 용도지역 더 알아보기

### 미용실 적합상권 유형

| 적합상권 유형 | 장단점 | 특성 |
|---|---|---|
| 제1후보지<br>(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 장점 |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br>▪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상승<br>▪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 |
| | 단점 |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br>▪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짐<br>▪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 필요 |
|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 장점 |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br>▪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br>▪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 |
| | 단점 |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br>▪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업 소상공인 창업 업종분석」>

### 1.3.3. 점포계약

####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 계약

▪ 미용실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 이하로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지 역 | 보증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참조).

### 임대차 기간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우선변제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및 ③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또는 사업자등록 후에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임차인 보호 더 알아보기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본문).

※ 권리금 더 알아보기

## 1.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1.4.1.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실 시설 및 설비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실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II 제4호 가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 1.4.2.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 인테리어 공사

##### 공사계약 체결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
| --- |
|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 완료 여부 |
| 미용설비의 공사의 완료 여부 |
| 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 점검 |
| 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 완료 여부 |
| 도시가스 공사와 연결 완료 여부 |
| 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 확인 |
|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 문제여부 확인 |
| 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 완료 여부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 하자담보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 광고물 설치

### 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미용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도시지역
-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 보전산지
- 자연공원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선정**

-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다목, 제5조 및 제18조제4항제1호).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 2. 미용실 개업

### 2.1. 사전 위생교육

#### 2.1.1.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또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제8항).

| 구분 | 내용 |
|---|---|
| 교육시간 | 3시간 |
| 교육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br>▪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br>▪ 기술교육<br>▪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
| 교육교재 |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섬·벽지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

▪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 미용실 관련 위생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실시합니다[「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 2.2. 영업신고

### 2.2.1.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영업신고

#### 영업신고 방법

▪ 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 영업신고증 교부

▪ 미용실 영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영업신고증 재발급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 미용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변경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

### 변경신고 방법

▪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미용실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 지위승계신고 방법

▪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3항 전단).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전단).

## 위반 시 제재

###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 명령 | | |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 명령 |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4조).

#### 형사처벌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 2.3. 사업자등록

### 2.3.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미용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
>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 ·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 <국세청-국세정보-사업자등록 안내>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제출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사업장을 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만 해당) 1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 ※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함)에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위반 시 제재

▪ 미용업자가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미용실 운영

### 3.1.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 3.1.1.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제2호].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8항).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 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전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 3.1.2. 위생관리

**미용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생관리**

▪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 미용기구의 소독

▪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및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6호, 2024. 5. 22. 발령·시행)].

| 기구명 | 위험도 | 소독 방법 |
|---|---|---|
| ▪ 가위<br>▪ 바리캉·클리퍼<br>▪ 푸셔<br>▪ 빗 | 피부감염 및 혈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 ▪ 표면에 붙은 이물질과 머리카락 등을 제거<br>▪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아 냄<br>▪ 마른 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물기 제거 |
| ▪ 토우세퍼레이터<br>▪ 라텍스<br>▪ 퍼프<br>▪ 해면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 냄<br>▪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br>▪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 ▪ 브러쉬(화장·분장용)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표면의 이물질 제거<br>▪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br>▪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 위반 시 제재

▪ 행정처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 과태료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

> ※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II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생관리 등급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실시

▪ 시·도지사는 미용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미용실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실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미용실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미용실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 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

### 3.2. 종업원 관리

#### 3.2.1. 근로계약 및 4대보험

#### 자격요건 확인

##### 미용업 면허 확인

▪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의 가입 의무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4대보험 가입 신고

▪ 국민연금

▹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7,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및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 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됩니다.

## 3.3. 고객 관리

### 3.3.1.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손해배상

#####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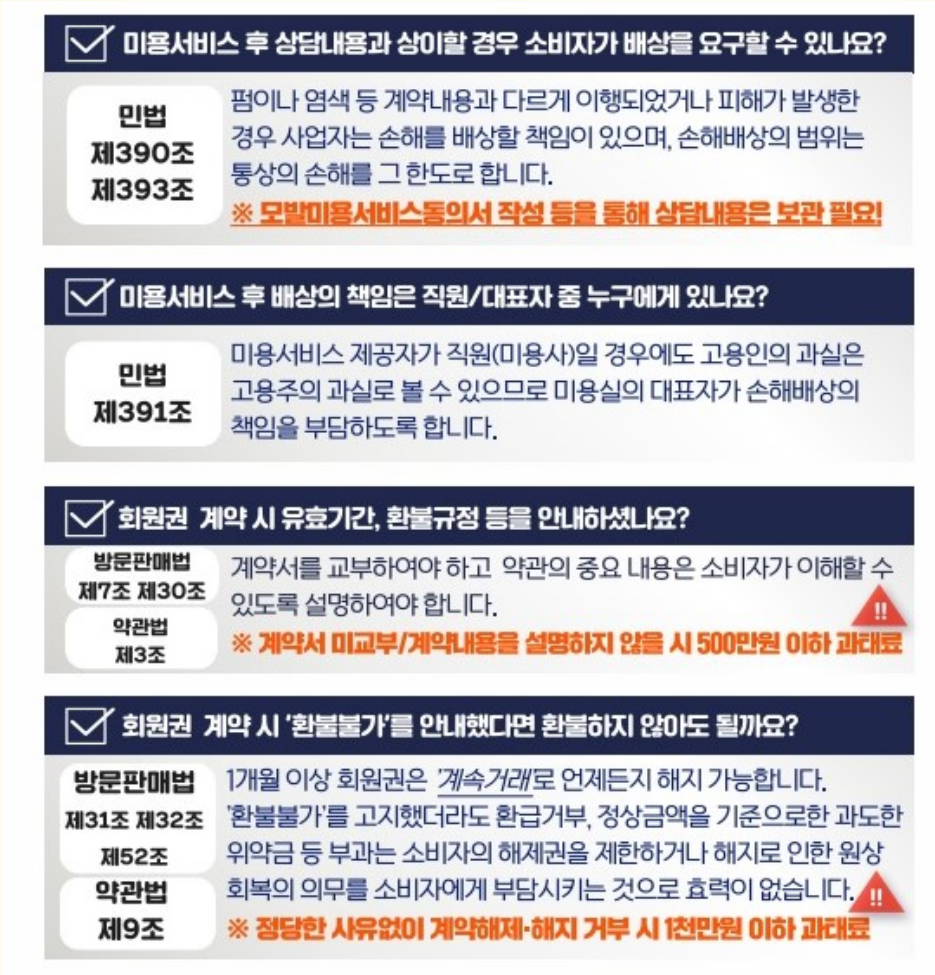
## 분쟁해결

### 분쟁해결 기준

▹ 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II 제12호].

|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br>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br>▪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 다만, 보증금은 미포함<br>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br>▪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미용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결과 불만족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미용사회가 마련한 ´모발미용서비스 동의서´를 사전 작성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대한미용사회중앙회(www.ko-ba.org) 참조>.




<출처: 대한미용사회중앙회(www.ko-ba.org)>

※ 그 밖에 헤어디자이너가 파마, 염색 등을 하다가 고객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과 미용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 등 손해를 담보하는 미용실 배상책임보험을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4. 미용실 폐업

### 4.1. 폐업신고 등

#### 4.1.1.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